

제423회 임시회
' 25. 1. 22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인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1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『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 일부개정(시행 2024. 7.17.)에 따른
지원대상 확대

4. 주요내용

○ 법령에 따라 조례 지원대상을 확대함(제2조, 제7조)

- (현행) 영주귀국주민 1세,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

- (개정) 영주귀국주민 1세, 동반가족(1세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
단서에 따라, 자녀와 그 배우자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○ 본 조례안은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원
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. 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복지
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<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(시행 2024.7.17.) 내용>

개정 전(시행 2021. 1. 1.)	개정(시행 2024. 7. 17.)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“동반가족”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“동반가족”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. 다만,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.

- 현재 충북에는 138명의 사할린 한인 주민이 청주, 제천, 음성지역에 거주 중임.

(단위:명)

구분		합계	청주	제천	음성
거주자	계	138	55	56	27
	영주귀국주민 1세	66	25	26	15
	1세 배우자	64	25	28	11
	1세 자녀	7	4	2	1
	1세 자녀의 배우자	1	1	-	-
거주지		4개소	오송휴먼시아 1단지	강저휴먼시아 아파트	음성신천휴먼시아아파트(26명) 음성금석h아파트거주(1명)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는, 조례에 사용된 “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”의 정의를 「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에 따라 개정함.
- 본 조례는 법 제정 이전인 2016년 7월 제정되어 당시에는 “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”에 대한 조례상 별도 정의가 필요했었음.
 - 이후 법 제·개정에 따라 “사할린동포” 및 “동반가족”의 뜻이 명확히 정의된 바, “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”에 대한 정의를 법 조항 인용을 통해 조문을 간소화하고 행정의 적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현행 (제정 2016. 7. 8.)	개정안
제2조(정의) 1. “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”(이하 “영주귀국주민”이라 한다)이란 러시아 사할린(이하 “사할린”이라 한다)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(韓人)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사업에 따라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1. “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”(이하 “영주귀국주민”이라 한다)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한 「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을 말한다.

○ 안 제7조는,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법 개정애 따라

- (현행) 영주귀국주민 1세,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
- (개정) 영주귀국주민 1세, 동반가족(1세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단서에 따라, 자녀와 그 배우자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)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- 또한 지원대상을 영주귀국주민 1세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, 그 동반가족은 국적 취득 전이라도 도 내 거소를 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, 현재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안 제11조는, ‘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’는 규정을 삭제한 것임.

- 본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,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.
- 따라서 조례에 본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2)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 바,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2) 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내용 및 법적으로 타당함.
- 또한 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